



보건복지동향

국민복지기본구상 실천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법령·제도개선과제 확정

지난 '96. 9. 24일 개최된 제3차 국민복지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국민복지기획단에서 건의한 국민복지기본구상을 실천하기 위한 사회복지분야 법령·제도개선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심의·확정하였음.

- 생활보호대상자가 합리적으로 선정·관리되도록 생활보호법을 개정
 - 생활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이 선정에서 누락되고 부적격자가 보호받는 사례를 방지하여 이들의 자립·자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생활보호법을 대폭 개정함.
 -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과 공적부조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와 최저생계비 책정 절차를 법에 명시
 - 실질적으로 생계보호가 필요했던 환금성 없는 재산보유자의 조건부 생계보호, 간병 등으로 생업종사 곤란자에 대한 한시적 생계보호, 장기치료 등으로 인한 생계 곤란자의 특별생계보호제도 도입
 - 부적격자의 생활보호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전산망 등에 의한 자산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지급된 보호비는 환수할 수 있도록 절차규정 보완

□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는 후견기관 운영 등 자활제도 보강

-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종교·교육·사회지도자 등이 운영하는 자활지원센터를 지정하여 공동작업·취업알선·협동공동체 운영 등을 지원
- 전국의 자활지원센터를 금융·정보·행정면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자활지원재단 설립

□ 장애인 등 노약자 편의시설 설치자에게 세제·금융상 혜택부여 등 시설설치 강화

- 금년 정기국회에서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하였음.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교통 통신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 대상범위를 명시
 - 정부는 민간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금융 세제상의 혜택 및 기술지원
 - 편의시설 표준화·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 지원기관」을 지정 운영
 -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주가 의무 미이행시 사법적 제재와는 별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일반인이 이용시 처벌토록 규정을 두기로 함.
- 장애인 및 노인가정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국민주택을 우선 공급키로 하였음.

□ 장애인 자영업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만든 제품을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 장애인 및 장애인시설에서 제작한 물품은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에 의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 공공시설의 매점, 자동판매기 등 설치·운영권을 장애인에게 우선 부여하기로 하였음.

□ 노인복지법을 노인보건복지법으로 전면개정, 노인건강·여가생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치매·중풍 등 질환 노인을 위한 전문 보건복지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독립주거형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의 분양근거를 마련하며,

- ‘주간’ 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가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개선하기로 하였음.
- 의사자 일시보상금 2배로 인상
 - 현재 월 최저임금액의 120배로 되어 있는 의사자 일시보상금을 240배로 인상하고, 보호신청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하였음.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후원금 회계관리의 투명성 강화 등 사회복지 관련 제도의 대폭 개편
 - 법인격 없는 종교단체 등에게도 시설설치를 허용하고 설치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후원금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또한, 보육시설 입지난 개선을 위해 택지개발 지구내의 근린생활용지에도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외에 금년 정기국회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을 제정하여 중앙과 지방에 민간주도의 공동모금회를 구성, 자율적으로 모금·배분업무를 하도록 하고, 연중 상시모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함.

“지역보건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공포(1995. 12. 29. 법률 제5101호)되고 동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96. 10. 21 일자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음.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도 또는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절차를 규정함(안 제2조).
- 지역보건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지역의 보건의

료에 관한 4년간의 종합계획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지역실정에 맞게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계획이 관계법령이나 국가 또는 시·도의 보건의료시책과 부합되도록 조정·권고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여 꼭 필요한 사항 외에는 최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지역보건의료사업이 과거 상의하달식에서 하의상달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 지역보건법 제9조에 의하여 보건소에서 관장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예시함(안 제5호).

- 보건소가 수행하는 업무는 지역보건법을 비롯한 각종법령에 산재되어 있으나 이들 업무를 종합하여 예시하여 줌으로써 관계법령에 의하여 보건소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명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독려하기 위함.

□ 전문인력 등의 배치 및 운영의 시정을 위한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6조).

- 지역보건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인력 등의 배치 및 운영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배치·운영을 도모함.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배치하여야 하는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을 규정함(안 제7조).

- 그 동안 보건복지부훈령으로 되어 있던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을 시행규칙에 포함시켜 법제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건 의료 전문인력의 확보 의무를 부여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기 위함.

□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 등의 승인신청 및 결과제출에 관한 절차와 서식 및 구비서류 등을 규정함(안 제12조).

-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 등을 하고자 하는 단체나 의료기관 등이 관할 보건소

장에게 제출해야하는 승인요청·결과제출 등의 서식과 구비서류, 절차 등을 규정함.

HIV 감염자 현황 및 에이즈 환자관리

□ 우리나라의 HIV 감염자 발생현황

-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확인된 우리나라의 HIV 총감염자수는 596명이라고 밝힘. 발표에 따르면 '96년 1월부터 9월말까지 75명의 HIV 감염자가 추가로 확인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17명의 감염자가 환자로 전환되었고, 23명(환자사망 17명 포함)이 사망하였다고 밝힘.
- 총 감염자를 감염요인별로 보면 성접촉을 통한 감염이 88.4%로 가장 많았으며, 동성 연애를 통한 감염은 전체의 18.8%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30대가 37.6%로 가장 많았으며 20대에서도 36.1%로 나타나 경제활동이 왕성한 연령층인 20~30대가 전체의 73.7%를 차지하고 있음.
- 한편 우리나라에서 감염자가 확인된 이후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감염자에서 환자로 전환되는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96년 9월말 현재까지 전년 동기 대비 7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에이즈 환자관리 강화

-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환자들의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에이즈 전문치료인 세미나'를 10월 9일 개최함. 기존 35개 전문진료기관의 에이즈 진단기준, 환자신고 및 환자관리지침 등을 보완함.

□ 에이즈 예방홍보 지속 실시

- 보건복지부는 에이즈 예방을 위하여 기제작 배포한 팸플렛 외 5종(130만부) 및 TV 자막광고 이외에 홍보카렌다, 스티커, 포스터 등을 연말까지 제작·배포하여 지속적

인 예방홍보를 실시할 예정임.

1994년도 국민영양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는 식품섭취실태, 영양소섭취실태, 식생활실태, 건강실태 등에 대한 '94년 국민영양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음.

□ 식품섭취 및 영양소섭취 실태

- 성인 1인 1일 섭취열량은 2,126 kcal로서 권장량의 85%를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사방법설계상 산정되지 않는 외식에서 열량을 추가적으로 섭취하는 것을 감안할 때 총섭취열량은 부족하지 않은 상태임.

□ 식생활 실태

- 국민 1인 1일 평균 식품섭취량은 1,067g으로서 이중 식물성식품이 842.5g, 동물성식품이 224.2g으로 나타났으며 동물성식품 섭취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식물성식품

- 섭취량: '92년 88.25g / '93년 839.2g / '94년 842.5g
- 총식품중비율: '92년 80.4% / '93년 79.6% / '94년 79%
- 비고: 식물성식품 섭취권장 필요
- 쌀 등 곡류: '94 섭취량 310.4g / '93대비 증감률 4.9% 감
- 콩 등 곡류: '94 섭취량 33.9g / '93대비 증감률 11.1% 증
- 채소류: '94 섭취량 275.7g / '93대비 증감률 4.2% 증
- 과일류: '94 섭취량 122.2g / '93대비 증감률 2.0% 증

▷ 동물성식품

- 섭취량: '92년 214.5g / '93년 215.1g / '94년 224.2g
- 총식품중비율: '92년 19.6% / '93년 20.4% / '94년 21%

- 비교: 과다 섭취 자제 홍보 필요
 - 육류: '94 섭취량 55.7g / '93대비 증감률 4.4% 감
 - 달걀 등 난류: '94 섭취량 20.0g / '93대비 증감률 15.2% 감
 - 어패류: '94 섭취량 82.6g / '93대비 증감률 10.4% 증
 - 유류: '94 섭취량 65.7g / '93대비 증감률 13.3% 증
- 총 식사횟수 중 가정에서의 식사비율은 '92년 75.3%, '93년 71.6%, '94년 70.6%로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매식의 경우는 '92년 9.0%, '93년도 10.6%, '94년 11.9%로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한 외식으로 영양불균형 초래 우려됨.
 - 가정외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 가장 선호하는 음식은 한식(밥류) 69.4%, 한식(일품) 8.7%, 국수류 5.5%, 중국식 3.9% 등으로 '93년과 동일순임.

□ 건강실태

- 비만측정 방법 중의 하나인 BMI에 의한 비만도측정 결과 저체중이 15.2%, 과체중 27.3%, 비만 3.3%로 전체 조사대상자중 45.8%가 비정상체중으로 나타남.

(단위 : %)

BMI	전체	남자	여자
20.0 이하(저체중)	15.2	11.1	18.8
20.1~25.0(정상체중)	54.2	57.3	51.3
25.1~30.0(과체중)	27.3	29.6	25.3
30.1 이상(비만)	3.3	1.9	4.6

주: BMI(신체중량지수) = 체중(kg)/신장(m)²